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998. 7.22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7월 22일

(제150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종전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산업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조례안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심의회 설치권한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개정(98.3)후 조례폐지(98.7)의 지연사유와 심의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